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2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22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1062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주, 박홍래, 설지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재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종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여상훈, 조해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촌 담당변호사 방이엽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합10620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1)

1. 주위적으로,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 포함)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43,309,184,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

포함)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43,309,184,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1,640원 및 4,812,131,64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15.까지 연 6%의, 12,131,64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812,131,64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15.까지 연 6%의, 12,131,64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1. 4.21.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8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1. 4. 21.까지 연 6%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6행 내지 제11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가) 이 사건 처분허가는 법률상 성질이 허가가 아닌 인가이고,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은 부담 내지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는 유효하게 매매계약을 보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성되었고, 원고 A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설령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주무관청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허가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A와 피고는 2016. 8.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납부를 위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을 조건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기한연장 승인 포함)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피고가 처분허가 연장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지도 않았고, 원고 A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완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기한연장 승인 포함)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처분허가에서 기간을 정한 허가조건은 철회권 유보에 해당하는데,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주무관청의 철회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기 전에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설령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이 철회권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에 관한 종기 또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사건 처분허가는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더구나 원고 A의 대표였던 H과 페이퍼컴퍼니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한 J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해제사유인 '매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A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허가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무효로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관할청의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24. 선고 2012다1871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교법인인 피고가 2015. 2.26. 관할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허가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센터를 40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 사건 처분허가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허가조건이 부과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허가일인 2015. 2. 26.부터 12개월이내인 2016. 2. 26.까지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A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이 사건 처분허가에서 정한 위와 같은 허가조건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할청은 이 사건 처분허가서에 처분대상 재산, 처분금액, 처분금의 용도를특정하여 허가하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허가에 부과된 각 이행사항이 '허가조건'임을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허가조건은 위와 같은 처분대상 재산, 처분금액, 처분금의 용도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 사건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한 점, ③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 사립학교의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재산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 허가조건은 기본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 학교법인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처분조건으로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허가조건은부담을 지우거나 처분청에게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허가의 유효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 사건 처분허가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서 나아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관할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부분은 피고가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그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피고가 이 부분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유효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위에 따라 효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원고 A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행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되었다는 원고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A와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기존의 매매계약 내용에 조건을 추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잔금납부에 관한 확약을 하고 피고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기한연장 승인 포함)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간 합의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부과된 조건이라 할 피고이사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 이사회가 잔금납부 합의서에 관한 승인결의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먼저 한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사후 추인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를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체결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 A는 그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A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6. 8. 5. 피고에게 '원고 A가 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매매 잔금 등을 위하여 500억 원을 일시로 브릿지대출 받기로 승인 받았고, 현재 K증권과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율 중에 있으니, 조만간 위 브릿지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잔금 납부확약서'를 송부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8. 18. 제5차 회의에서 '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매수인인 원고 A로부터 제출받는 조건으로첨부된 합의서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처분허가 기한연장 신청할 것의 가부'에 관하여의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0. 4. 제7차 회의에서 '원고 A와 매매계약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사유를 학교에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잔금 미납부에 대해지연배상금으로 연 5%는 반드시 관철하여 차기에 논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10. 10. 피고에게 '잔금 납입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으로 잔금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관련 잔금 납입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 지급 확약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마) 그 후 2016. 10. 11. H이 원고 A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J이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0. 20. 제8차 회의에서 원고 A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그 명의의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10. 27.까지 원고 A의 새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논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1. 원고 A에게 '2016. 10. 11.자로 원고 A의 대표이사가변경되었으므로 신임 대표의 확약서를 요청하고 2016. 10. 27. 16:00까지 원고 A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매 잔금 및 손해비용 납입의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한다'는내용으로 '매매 잔금 납입 및 이행조건 확약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사)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0. 31. 제9차 회의에서 '원고 A의 잔금과 손해비용의 납입 확약과 잔금 납입 확약 미이행시 계약해제 조건을 명시한 확약서를 통보시한인 2016. 10. 27.까지 제출받지 못하여 관할청이 보완 요청한 사항이 미비되어 승인신청이 불가하므로 처분허가 연장에 관한 건은 폐기함'을 의결하였다.

아) 원고 A가 2017. 1. 26. 피고에게 '그 동안 전임 대표이사가 진행해온 일련의 과정과 매매잔금 지급에 대한 이견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금융기관(K증권 등)으로부터 매매잔금 지급관련 브릿지대출이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제 잔금을 납입하고자한다'는 내용으로 '잔금 납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3)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게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허가 기한연장 신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주장도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A와 피고가 2016. 8. 18.자로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 잔금납부 합의서 승인 및 주무관청에 처분허가 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원고 A는 위 주무관청의 매각허가기한 연장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이사회의 잔금납부 확인서에 관한 승인결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합의서 또는 별도의 잔금납부 합의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이사회의 2016. 8. 28.자 제5차 회의록에 첨부된 합의서에는 원고 A와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이사회에서 2016. 8. 28. 제5차 회의가 열릴 당시 이사장이 부재하였고 위 회의에서 비로소 L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회의 이전에는 L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적법하게 기명날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이사회의 2016. 8. 28.자 제5차 회의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이사회가 2016. 8. 28.자 제5차 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피고 이사회가 이 사건 합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그 효력발생 조건인 피고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A가 납부하지 못한 잔금을 납부하는 것과 피고 이사회의 잔금납부 합의서에 관한 승인결의 및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기한연장 승인'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임을 명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와 방법,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매매조건 등 새로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공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원고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원고 A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청구채권 중 1,017,876,711원의 채권에 관하여 2021. 2. 25.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A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B이 2016. 12. 14. '원고 A와 피고 간 이 사건 매매계약의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 중 48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0358호)을 받았고, 2016. 12. 23.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이 원고 A에게 송달되어 2016. 12.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예비적 청구로서 당초 '4,812,131,64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0.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금액을 제외하고 '원금 12,131,640원 및 4,812,131,640원에 대한 2015. 8. 19.부터 2016. 12. 1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12,131,640원에 대한 2016. 12. 16.부터 2020. 7. 27.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이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6년제24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1. 2. 25.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의 승소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청구채권 중 1,017,876,71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716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21. 3. 4.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21. 3. 4.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 A가 제2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원금 12,131,640원 및 4,812,131,640원에 대한 2015. 8.19.부터 2016. 12. 1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12,131,640원에 대한 2016.12. 16.부터 2020. 7.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21. 3.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청구금액으로 정한 판결원리금 1,017,876,711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2021. 3. 5.부터 생기는 원금 12,131,6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결국 원고 A는 제2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B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이 유효조건에 해당하여 그 허가조건에서 정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원고 A의 전부채권자인 원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인 2016. 2. 26.이 도과한 시점이나,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8. 1. 24. 또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11. 29.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약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하였다. 설령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위약벌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 A가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4,812,131,64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 A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며, 원고 B이 2016. 12. 14.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중 48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M이 2021. 2. 25.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한 판결원리금청구채권 중 1,017,876,71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받은 계약금 4,812,131,64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중 일부를 전부 받은 원고 B에게 위 계약금 중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M에게추심권한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원고 B의 원고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 일부 채권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B의 전부금 청구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채권금액부분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과 관련한
원고 B의 집행채권의발생 원인이 된 계약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결과는 피고가 원고 B의 위 전부금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물취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호에서 '원고 A가 매각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원고 A는 제3조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각재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별로 본다'고
정한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인 2016. 2. 26.을
도과함으로써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6. 2.
27. 이후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거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른 위약금 규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가 실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호와제7조를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반해, 원고 A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되어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에서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관할청이 이 사건 처분허가를 부당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이유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위약금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잔금 지급기한이 도과한 이후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 및 이 사건 소송 중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의 지체로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무효로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를 미처 상정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매매계약처럼 원고 A의 잔금 이행 지체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 조항만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약의의 수익자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약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약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약의로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약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약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인 2016. 2. 26.을

도과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34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위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18나11068)와 상고(대법원 2018다269784)가 차례로 기각되어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 위와 같이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이 법률상 원인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전부금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피고는 결국 무효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A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점유·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가)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신의칙상 인정되는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신뢰하고 그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계 1,848,390,715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이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1,888,396,253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3,736,786,968원(=1,848,390,715원 + 1,888,396,253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는 학교법인인 피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와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하여 매수인의 협력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처분허가의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이진영 판사 이선미

별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제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A가 제1심에서 2016. 8. 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2015. 8.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6. 8. 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2016. 8. 18.자 합의에 의하여 2015. 8. 19.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었거나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여러 차례 정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처분허가(처분허가 기한연장승인 포함)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와 제1 예비적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제1 예비적 청구취지를 최종 변경한 부분이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정해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2022. 6. 24.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 후 항소취지' 중 제2의 다.(1),(2)항의 각 2020. 7. 28.부터 2021. 4.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연 12%'는 원고들의 2022. 1. 13.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기재 및 2022. 1. 19.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보아 '연 6%'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한다.

3) 을 제22호증의 1, 2, 2022. 7. 26.자 피고 준비서면 첨부자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M이 원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B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변제계약을 1,017,876,7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위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2021. 7. 15. 선고 2020나12601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기각 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O이 원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B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변제계약을 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위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 선고 2021가합1571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4) 기록에 의하면, 위 ①항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위 ②항 사해행위취소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